##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7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상욱ㆍ서천호ㆍ백종헌

김기현 · 김선교 · 최형두

박수민 • 권성동 • 안상훈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 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 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 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법률 제 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을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인정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을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을 각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지급 대상 및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	1의2. <u>"공상경찰공무원"이란</u>		
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	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		
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	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공무원을 말한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			
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			
원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제12조(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u>지원)</u> ① 국가는 <u>위험직무공상</u>	<u>공상경찰공무</u>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u>원</u>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② 공상경찰공무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b>.</b>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u>지급</u>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u>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